

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시행규칙은 호서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①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② 대학원 학칙과 이 시행규칙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입학 및 재·편입학

제3조 (입학전형) 대학원의 입학전형기본계획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4조 (입학전형 구분)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특별전형에 의한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일반전형에 지원자가 미달되었거나 시험성적이 합격점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인원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5조 (일반전형 방법) ① 석사과정의 일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4. 21)

② 박사과정의 일반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4. 4. 21)

③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자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지원한 일반전형은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또는 입학 후 사전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1. 26)

제6조 (특별전형 지원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전형에 지원 할 수 있다.

1. 국, 공·사립의 전문연구소 과장급 이상
2. 목사 안수 후 3년 이상 목회 경력자 (개정 2013. 3. 1)
3. 박사학위 취득자로 목사안수 후 3년이상 경과자 (신설 2013. 3. 1)
4. 산업체 및 산학연구소 5년 이상 실무 및 연구경력자
5.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7년 이상 초·중등교원 경력자
6. 5급이상 공무원
7. 연구능력이 뛰어난 자로서 학과교수(전원)의 추천을 받은 자
8. 위와 유사한 여타분야의 전문가
9. 산업체 인정여부는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 2호에 준하는 자 (신설 2014. 4. 21)

제7조 (특별전형 방법) ①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② 특수·전문대학원 출신자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으로 지원한 특별전형은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거나 또는 입학 후 사전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1. 26)

제8조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9조 (지원서류) 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나. 대학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또는 학력 인정서
 - 다.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 라. 재직 및 경력 증명서(특별전형 자에 한함)
 - 마.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cm×4cm) 2매
2. 박사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졸업예정 증명서)
-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 라. 재직 및 경력 증명서(특별 전형자에 한함)
- 마. 사진(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3cm×4cm) 2매

제10조 (시험과목) 대학원 입학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4. 4. 21>
2. <삭제 2014. 4. 21>
3. 서류심사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입학할 공식적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 (신설 2014. 4. 21)
4. 면접 : 학술연구의 능력과 적성, 인성, 지원학과(또는 전공)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등을 심사한다.(호 변경, 개정 2014. 4. 21)

제11조 (편입학 지원자격) ①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전공분야의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자 (개정 2013. 3. 1)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전공분야의 박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자 (개정 2013. 3. 1)
- ②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편입전 대학원에서의 정규등록 학기 수와 이수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지 원 자 격	
		정규등록학기수	이 수 학 점
석사과정	2	1학기 이상	6학점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이상
박사과정	2	1학기 이상	6학점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이상
	4	3학기 이상	18학점이상

제12조 (편입학 전형방법)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의거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편입학 지원서류)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 나. 대학 졸업증명서 1 통
 -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 통
2. 박사학위과정
 -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나.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1 통

다. 대학, 대학원 석사 및 대학원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 통

제14조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편입전 대학원의 학점은 편입학생의 입학전에 해당학과 교수회의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편입학기	학점인정	편입학기	학점인정
2	6	2	6
3	12	3	12
		4	18

제15조 (편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편입학생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우리 대학원에 편입학 한 학기에 따라 적용 받는다.

제16조 (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정원의 여석 범위 안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17조 (합격자의 결정과 합격 통지서) 대학원장은 입학 또는 재·편입학 사정자료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 후 합격여부를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자에게 합격 통지서를 발부한다.

제18조 (입학등록)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통지서를 받은 입학자와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는 소정 기일 내에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 입학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입학 등록을 마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 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제 3 장 교과과정 및 수업

제19조 (교과과정의 편성과 이수학점)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다음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교 과 목 구 분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공통(필수,선택)과목	12학점 이내	18학점 이내
전 공 선택 과 목	12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추가이수과목(타전공입학자)	학부에서 9-12학점	석사과정에서 9-12학점

② 대학원 학과별 내규로 규정한 공통과목의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에 따라 제1항에서 규정한 공통과목의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3학점까지 이를 전공 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 (교과목의 학점 수) 대학원에서 설강하는 각 교과목의 학점 수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교과목의 설정과 변경) ① 주임교수는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을 설정하고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학과에 따라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을 공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설정된 교과목의 변경은 주임교수가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을 개설하기

6개월 이전에 이를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논문지도과목)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논문연구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논문지도과목의 학점은 없으며, 이수여부를 합격(P) 또는 불합격(NP)으로 평가한다.

제23조 (추가이수과목) ① 학사과정의 전공과 비동일 계열로 진학한 석사과정 입학자는 학과가 지정하는 9내지 12학점의 학사과정 교과목을 석사과정 이수학점에 추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② 학사과정의 전공과 동일 계열로 진학한 석사과정 입학자의 경우라도, 전공 성격상 필요하다면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에서 지정하는 6내지 9학점의 학사과정 교과목을 석사과정 이수학점에 추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6)

③ 석사과정의 전공과 비동일 계열로 진학한 박사과정 입학자는, 학과가 지정하는 9내지 12학점의 석사과정 교과목을 박사과정의 이수학점에 추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④ 석사과정의 전공과 동일 계열로 진학한 박사과정 입학자의 경우라도, 전공 성격상 필요하다면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가 지정하는 6내지 9학점의 석사과정 교과목을 석사과정 이수학점에 추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6)

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의 추가 이수과목중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서 추가 이수과목과 동일한 과목이나 유사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이수 학점을 줄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 1. 26)

제24조 (교과목의 개설) 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매 학기 개설할 교과목을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선정하고 이를 개강일 2개월 이전에 대학원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개설 교과목수와 수강 학생 수) ① 학과별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전체 재학생 수에 따라 학과별로 매 학기 최대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수와 학점 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득이하게 최대 개설 가능 교과목 수를 초과하여 개설하여야 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1. 13, 2014. 4. 21)

재학생수	10명이하	11~15명	16~20명	21~30명	31~40명	41~50명
교과목수	6	7	8	9	10	11
학 점 수	18	21	24	27	30	33

② 개설된 교과목은 수강생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강의개설을 허용한다. 다만, 수강생이 1명인 경우 부득이 교과목을 강의개설을 하여야 할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수업계획서)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기 개강일 1개월 이전에 이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학생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27조 (강사제청) 각 학과 주임교수는 교과운영상 강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강일 2개월 이전에 시간강사 제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수강 신청 및 변경)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 과목을 정하고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학과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개강일 1주일 이전에 이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3주일 이내에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변경원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 (학점인정) 대학원 신학과 및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3. 1)

1. 성지성서연구 현장세미나에 참여한 자는 다음 내용에 따라 3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성지성서연구 현장세미나를 수강하고 성지를 방문 후 지도교수 확인서, 성지성서연구 현장세미나 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목회현장론에 참여한 자는 다음 내용에 따라 3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학기 중 대학원의 학습목적과 그에 따른 지도아래 국내 목회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목회현장학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목회현장 방문 후 지도교수확인서, 목회현장론 보고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석·박사과정생은 2차까지, M.DIV. 3년 과정은 3차까지 목회현장론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3. 이전에 이수한 위 1, 2호 과목도 모두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9조 (성적 평가표 제출)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종강 후 3주일 이내에 성적 평가표와 관련 자료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 (수업반응도) 각 학위과정에 있는 모든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에 대해서는 매 학기 수업반응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

제30조 (성적 취소) 기 이수한 교과목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수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최종학기에 재학증인자에 한하여 성적취소 기간에 총 6학점의 범위 안에서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 (타 학과 교과목의 수강)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타 학과의 교과목을 전공학과의 전공 선택 과목으로 석사과정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통합과정은 15학점까지 이를 수강 할 수 있다. 다만, 학문 성격이 유사한 학과간에 주임교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설한 교과목은 전공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3. 11. 13)

제32조 (학사과정자의 대학원 수강) ① 학사과정에서 90학점(예능계열 85학점)이상을 취득하고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기 직전 정규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5 이상인 자는 대학원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한 학기에 3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위의 학생이 석사과정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이를 석사과정에 이수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 (석사과정자의 학사과정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의 학생은 학사과정의 전공Ⅱ단계에서 이수하지 않는 교과목을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이수 할 수 있으며, 이를 석사과정의 전공 선택 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

제34조 (타 대학원의 학점 인정)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문 성격이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호서대학교 소속 타 대학원 개설 교과목을 전공학과의 전공선택 과목으로 석사과정은 6학점까지,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통합과정은 15학점까지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삭제 2012.3.1, 신설 2013. 3. 1, 개정 2013. 11. 13)

제35조 (수료학기의 인정기준)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기를 인정하는 기준은 정규등록 학기 수와 수료학기말 시점의 이수 학점에 따라 다음과 같다.

구 분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정규등록 학기수	1학기 이상	2학기 이상	3학기 이상	4학기 이상	1학기 이상	2학기 이상	3학기 이상	4학기 이상	5학기 이상	6학기 이상
이수학점	6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6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제 4 장 학 위 수 여

제 1 절 학위청구 자격시험

제36조 (시험과목) 학위청구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 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

제37조 (외국어 시험과목) ①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전공영어를 시험과목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전공영어를 한국어로 대체하고, 한국어 강좌를 2학기 이상 수강한 자는 한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2. 3. 1, 2013. 3. 1, 2014. 4. 21)

② 각 학위과정의 학생 중 대학원의 각 전공에서 지정하는 영어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은 전공 영어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2. 3. 1, 2013. 8. 26, 2014. 4. 21)

③ <삭제 2014. 4. 21>

제38조 (종합시험의 시험과목) ① 석사과정의 학생은 3과목의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②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학생은 4과목의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개정 2013. 11. 13)

제39조 (응시자격) 학위청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시험 : 석사과정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박사과정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통합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개정 2013. 11. 13)

2. 종합시험 :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석사과정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자,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통합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개정 2012. 3. 1, 2013. 11. 13)

제40조 (응시절차) 학위청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고 대학원 교학팀에 응시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41조 (시험일자) 매 학기 중에 실시하며, 시험실시 2주전에 공고한다.

제42조 (출제 위원) 대학원장은 제37조 및 38조 각 과정, 각 과목의 출제와 채점을 해당 교수에게 위촉한다.(개정 2013. 3. 1)

제43조 (출제 범위)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 시험 : 전공영어를 실시하며, 전공영어 능력이 해당분야의 연구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과 범위내에서 출제한다. (개정 2014. 4. 21)

2. 종합시험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44조 (배점 및 합격기준) ① 외국어시험에서 전공영어는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4. 4. 21)

② 종합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45조(합격자 발표)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결과는 대학원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며, 대학원장은 합격여부를 확정하고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46조 (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의 관계없이 재 응시 할 수 있으며,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차후 2회에 한하여 과목별로 재 응시 할 수 있다.

제 2 절 학위청구논문과 심사

제47조 (학위청구논문의 구비사항) 학위청구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8. 26)

1. 표제지(소정의 규격)

2. 학위논문합격인준서 (개정 2014. 4. 21)

3. 연구윤리서약서 (개정 2014. 4. 21)
4. 목차 (호 변경 2014. 4. 21)
5. 본문 (호 변경 2014. 4. 21)
6. 영문초록(논문 뒷면에 부착) (호 변경 2014. 4. 21)
7. 부록(필요한 경우) (호 변경 2014. 4. 21)
8. 참고문헌 (호 변경 2014. 4. 21)

제48조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와 양식)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와 규격 및 양식과 분량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 (학위청구논문의 작성용어) 학위청구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된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한국어로 작성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기) ① 심사용 학위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개정 2012. 3. 1)

② 학위논문 인쇄본의 제출시기는 7월과 1월로 한다. (개정 2012. 3. 1)

제51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 학위청구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이내에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11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2014. 4. 21, 2015. 1. 26)

제52조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부수와 절차)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대상자는 학위청구 최종심사가 종료된 후 규격에 맞게 인쇄된 학위논문 4부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1)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 (학위청구논문 접수의 부결) <삭제 2014. 4. 21>

제54조 (논문심사위원의 자격과 위촉) ① 논문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분야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단, 논문심사기간 중 국내에 체류가 불가능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 3. 1, 2012. 3. 1, 2014. 4. 21)

②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한다. (개정 2011. 3. 1)

③ 논문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제55조 (논문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제54조의 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거나 위원의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선정하게 하여 논문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56조 (논문심사위원의 교체)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 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 할 수 있다.

제57조 (논문심사 회수와 공개구술시험)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경우에는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2차로 논문내용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 구술시험을 과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3차 이상으로 하되,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고, 2차로 논문내용의 발표를 통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3차로 논문요지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 구술시험을 과한다.

제58조 (논문심사자료의 제출) 심사위원이 학위청구논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문제출

자에게 인용한 문헌이나 그 번역본, 참고 될 문헌, 도형, 표본,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 (심사위원의 정족수) 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부득이한 경우 재적위원 5분의 4이상의 출석으로 심사 할 수 있다.

제60조 (논문심사의 기간과 기간 연장)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개시 일로부터 각각 1개월과 2개월 이내에 논문심사와 공개 구술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6개월까지 심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1조 (논문심사의 판정) 학위청구논문과 공개구술시험에 대한 심사위원의 개별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학위청구 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의 통과를 판정한다.

제62조 (논문심사의 결과보고) ①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사요지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학위수여의 확정) 대학원위원회는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학위 수여를 확정한다.

제 3 절 학 위 수 여

제64조 (학위수여 자격) 학칙 제63조에 의한 학위수여 자격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4. 4. 21)

1. 석사학위과정

가.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다만, 이공계 학생의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 과목을 Pass 하여야 함. (이공계열의 범위는 교육 주관기관 규정을 따름.) (개정 2010. 3. 1)

나. 취득학점의 총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논문연구계획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서 1학기 이상 논문 연구 지도를 받은 자.

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신설 2014. 4. 21)

바. <삭제 2015. 4. 22>

사. 논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음악학과는 내규에 따라 학위 연주회 및 Lecture Recital로 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호 변경, 개정 2014. 4. 21)

2. 박사학위과정

가. 36학점(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제외) 이상 취득한 자. 다만, 이공계 학생의 경우, ‘연구실 안전관리’ 과목을 Pass 하여야 함. (이공계열의 범위는 교육 주관기관 규정을 따름.) (개정 2010. 3. 1)

나. 취득학점의 총 평점 평균이 3.0이상인 자.

다.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6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논문연구계획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서 2학기 이상 논문 연구 지도를 받은 자.

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신설 2014. 4. 21)

바. 학위논문의 주제가 생명윤리와 관련된 경우,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해당자에 한함) (신설 2014. 4. 21, 개정 2015. 4. 22)

사. 논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 (호 변경 2014. 4. 21)

3. 석·박사통합과정(석사학위) (신설 2013. 11. 13)

가. 4개 학기 이상 등록

나. 33학점(박사과정 교과목 9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다만, 이공계 학생의 경우, ‘연구실안전관리’ 과목을 Pass 하여야 함.(이공계열의 범위는 교육 주관기관 규정을 따름)

다.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라. 석사학위 취득할 때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석사학위논문 작성 면제

4. 석·박사통합과정(박사학위) (신설 2013. 11. 13)

가. 60학점(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다만, 이공계 학생의 경우, ‘연구실안전관리’ 과목을 Pass 하여야 함.(이공계열의 범위는 교육 주관기관 규정을 따름)

나.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라. 8학기 이상 등록하고 논문연구계획 승인을 받은 학생으로서 3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 를 받은 자

마. 연구윤리 관련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신설 2014. 4. 21)

바. 학위논문의 주제가 생명윤리와 관련된 경우,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해당자에 한함) (신설 2014. 4. 21, 개정 2015. 4. 22)

사. 논문심사 및 최종 구두시험에 합격한 자 (호 변경 2014. 4. 21)

제65조 (학위수여 사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 을 행한다.

제66조 (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별표 1과 같이 과정별 및 학과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2. 3. 1, 2014. 3. 1, 2015. 4. 22, 2016. 8. 1, 2017. 9. 1)

제67조 (학위수여 시기 및 회수) 학위수여 시기는 년 2회로 한다.

제68조 (학위기) 석사학위는 별지서식 1에 의하고, 박사학위는 별지서식 2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 장이 수여한다.

제69조 (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수여 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0조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절차에 따라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수여의결을 확정한다.
2.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은 대학원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3. 명예박사 학위수여 종별은 제66조의 박사학위 종별에 따르되 그 구분은 이를 받을 자의 공적의 성질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명예박사 학위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이를 수여할 수 있다.
5. 명예박사 학위는 별지서식 3에 의한 학위기로서 총장이 수여한다.

제71조 (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71조의 2 (연구부정 행위가 밝혀질 경우 지도교수 및 지도학생에 대한 조치) 호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의해 지도학생의 연구부정 행위가 밝혀질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지도교수 및 지도학생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신설 2013. 6. 18, 개정 2015. 1. 26)

제 5 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퇴학

제72조 (등록금) 등록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교과목 이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논문연구와 실험, 학위논문작성 등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논문지도비 등을 정규등록금이라 한다.
- ② 수강학점 수에 따라 정규등록금의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을 학점등록금이라 한다.
- ③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에서는 최소 4학기, 박사과정에서는 최소 6학기, 통합과정에서는 최소 8학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제72조의 2 (수업료 등의 반환)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2. 3. 1, 개정 2017. 9. 1)

1.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2.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제73조 (학기 당 이수학점 초과 수강자의 등록) 학기 당 9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학생은 정규 등록금의 2분의 1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

제74조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은 학기당 수강학점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금액으로 정규등록 또는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 :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

제75조 (등록절차) 학생은 대학원 교학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교부 받아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지정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 (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가정 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휴학
2. 군 입대 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기 위한 휴학

제77조 (휴학절차) ①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해당기간 내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

② 군 입대 휴학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 휴학 중 군에 입대할 경우 다시 군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 (휴학생의 등록금 대체) ①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휴학한 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개정 2012. 3. 1)

② 개강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일반휴학한 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따라 산출된 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복학 시 추가납부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1호에 준한다. (개정 2012. 3. 1)

1. 수업일수 1/3 이전 휴학자 : 등록금의 1/3 납부
2. 수업일수 1/3 초과 1/2 이하 휴학자 : 등록금의 1/2 납부
3. 수업일수 1/2 초과자 : 등록금 전액 납부

제79조 (복학) ① 일반 휴학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소정기일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26)

② 군 입대 휴학 자는 전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정기일 내 복학하여야 하며, 개강 후 4주 이

내에 전역예정자에게도 복학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6)

제80조 <삭제 2015.12.23>

제 6 장 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개정 2017. 9. 1)

제81조 (주임교수의 직무) 주임교수는 해당학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과목 설정과 변경 및 설강, 지도교수의 제청, 기타 해당학과의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제82조 (주임교수의 임명) ① 각 학과의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②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83조 (지도교수의 위촉 등)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학생의 입학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임교수의 제청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1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2.3.1.)

③ 한 학기에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학위과정은 6인 이내, 박사학위과정은 4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3. 8. 26)

제84조 (지도교수의 자격) ① 각 학위과정 학생의 지도교수는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의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조교수 이상의 교수가 없을 경우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전임교수 이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외부인사를 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2014. 4. 21)

② 학생이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교원일 경우에 지도교수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교원으로 당해 학생과 동급 이상인 자로 한다.

③ 3년 이내(석사지도의 경우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교수는 지도교수를 맡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과사정에 따라 대학원장 승인 하에 퇴직예정교원도 지도교수를 맡을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해야 한다. (신설 2012.3.1)

제85조 (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는 해당학생의 수강신청을 포함하여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연구와 실험 및 학위논문의 작성을 지도한다.

제86조 (지도교수의 변경) 지도교수가 치병, 장기해외출장이거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의 지도가 어려울 때에는 주임교수가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 할 수 있으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7조 <삭제 2017. 9. 1>

제88조 <삭제 2017. 9. 1>

제89조 (논문계획서) ① 학위청구논문의 연구와 지도를 위하여 석사과정 학생은 3학기 박사과정 학생은 4학기, 통합과정 학생은 6학기까지 석·박사학위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11. 13, 2014. 4. 21)

② 지도교수는 담당학생의 석·박사학위 논문계획서를 심사하고 수정·보완하게 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한다. (개정 2014. 4. 21)

③ 생명윤리와 관련된 주제일 경우, 박사과정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논문계획서를 호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 그 결과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생명과학기술 연구의 범위는 「호서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을 따름) (신설 2014. 4. 21, 개정 2015. 4. 22)

③ 석·박사학위 논문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석·박사학위 논문계획서를

지도교수의 심사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 변경, 개정 2014. 4. 21)

제 7 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 1 절 연 구 과 정

제90조 (연구과정) 연구과정은 비학위과정으로 일반연구생과 수료후연구생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9. 1)

제91조 <삭제 2016. 9. 1>

제92조 (신청서류 및 절차) ① 연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② 학과 주임교수는 신청자격을 심사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신설 2016. 9. 1)

[제목변경 2016. 9. 1]

제93조 <삭제 2016. 9. 1>

제94조 (재학연한) 연구과정의 재학 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 2학기로 구분한다. 다만,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수료후연구생 경우에는 연구기간 만료일까지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 2017. 9. 1)

[제목변경 2016. 9. 1]

제95조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1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96조 (복학, 재입학) ① 연구과정생은 이수한 동일학기에 복학 또는 재입학할 수 있다.(개정 2016. 9. 1)

② 일반연구생의 경우 교과과정표에 의하여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1)

③ 수료후연구생은 전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선택적으로 학점취득이 가능하다.(신설 2016. 9. 1)

제97조 (제적) 연구과정생이 자격미달 혹은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일로 물의를 일으킬 때는 한시라도 대학원장은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98조 (연구생등록금) ① 연구과정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② - 일반연구생 :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2

- 수료후연구생 : 해당 학기 수업료의 5% (개정 2011. 3. 1, 2016. 9. 1)

③ 연구과정생 수료 후 본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 입학금은 면제한다.(개정 2016. 9. 1)

[제목변경 2016. 9. 1]

제99조 (수료학점) 연구과정생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 연 12학점으로 한다. 단, 수료후연구생이 전일제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경우 별도 학점취득없이 수료후연구생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개정 2016. 9. 1)

제100조 (학점인정) <삭제 2013. 3. 1>

제101조 (연구실적 증명서) 연구과정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별지 4호 서식의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2조 <삭제 2016. 9. 1>

제 2 절 공 개 강 좌

제 103조 (공개강좌) 대학원은 교과과정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강좌를 열 수 있다.

제 104조 (공개강좌의 개강)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과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 이를 결정하여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제 105조 (공개강좌 수료증)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삭제 2017. 9. 1>

제 106조 <삭제 2017. 9. 1>

제 107조 <삭제 2017. 9. 1>

제 108조 <삭제 2017. 9. 1>

제 109조 <삭제 2017. 9. 1>

제 110조 <삭제 2017. 9. 1>

제 111조 <삭제 2017. 9. 1>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학칙시행규정’, ‘학위수여규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는 폐지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3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3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3년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23)

① (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66조의 경우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시행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 1)

증서번호 석제0000호

학 위 기

성 명 : 0 0 0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000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함으로써 00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호서대학교 000대학원장 00학박사 0 0 0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000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00학박사 0 0 0 (인)

학위번호 : 호서대 0000(석)000

(별지서식 2)

증서번호 박제0000호

학 위 기

성 명 : 0 0 0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 대학교 000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함으로써 00학박사의 자격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호서대학교 000대학원장 00학박사 0 0 0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000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00학박사 0 0 0 (인)

학위번호 : 호서대 0000(박)000

(별지서식 3)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 0 0 0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우리나라의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0 0 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대학원장 000박사 0 0 0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명예 0 0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총장 000박사 0 0 0 (인)

학위번호 : 호서대 명박 000

(별지서식 4)

제 호

연구 실적 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과정에서 년 월간을 연구하여 그 실적이 양호하기에 이를 증명함

20 년 월 일

호서대학교 대학원장 000박사 0 0 0 (인)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6. 9. 1)

연구생 신청서 (일반연구생□ · 수료후연구생□)	
소 속	_____ 대학원 _____ 학과 (석사·박사)과정
성 명	
학 번	
수료일자	
상기 본인은 본교 대학원 학칙 시행규칙 제92조에 의거, 대학원 연구과정생으로 신청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확인자 성 명 : 주 소 : (우편번호) (인) ☎ : 지도교수 : 주임교수 : (인) (인) 대학원장 귀하	